

구금시설실태조사보고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인권정보자료실
CPal.43

서울지방변호사회

구금시설실태조사보고서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편 —

2002

서울지방변호사회

구금시설실태조사보고서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편 —

2002

서울지방변호사회

발 간 사

우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 동안 사회적 약자 및 소외된 계층의 인권 보호와 권익 신장을 위해, 특히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많은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 나라의 인권의 수준이 그 나라의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고 할 때 우리 인권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찾아나서는 일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상대적으로 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거의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했던 구금시설의 인권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제도의 개선 및 법규의 개정 방향 등을 제안하고자 구금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물로 이 보고서를 펴내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인권위원들이 1년이 넘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기획하고, 토론하고, 질의하고, 고민하고, 실제 발로 뛰며 조사하여 결론을 이끌어 낸 보고서로, 넘기는 쪽마다 땀냄새가 묻어나기에 더욱 값지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가 열악한 우리 구금시설 현대화의 촉매제가 되길 바라며, 아울러 그 곳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의 인권상황 개선에도 한 몫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보고서의 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박영립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 구금시설조사준비소위원회 이국재 위원장 및 집필위원 여러분과 기타 여러 도움을 주신 시민단체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발간 실무를 맡아 애써 준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그 노고를 치하합니다.

2002. 10.

서 울 지 방 변 호 사 회
회 장 박 재 승

이제 감옥에도 햇볕을 비추어야

2001년도 「법무연감」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인원이 IMF 사태 이후인 1998년 12월 7일에 74,377명까지 이르렀고 2000년도 말에는 많이 감소하긴 하였지만 61,346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어느 외국통계에 의하면 교정시설의 수용자 가운데 중범자는 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빈민 출신의 경범자이며, 40%는 미결수용자이고 16%는 외국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통계는 없지만 수용자들 중에 중한 범죄자보다는 경한 범죄자가 훨씬 많고 범죄자의 대부분이 중산층 이하 서민층에 속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들이 사회적응력 부족이나 한 순간의 실수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지극히 제한된 공간에 격리 수용되어 있지만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소중한 이웃이다. 이러한 우리의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적응력을 키워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2001년 2월 27일 1차 회의에서 사회적 약자 및 소외된 계층에 대한 인권 개선활동 등을 주요사업으로 정하고 그중 인권침해의 소지가 상대적으로 큼에도 거의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했던 구금시설, 즉 교도소, 구치소, 검찰 구치감, 경찰서 유치장 등의 인권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제도의 개선 및 법규의 개정 방향 등을 제안할 목적으로 그 실태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먼저 인권위원회는 14개 시민·인권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금시설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 등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시민·인권단체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수차의 내부 세미나를 거쳐 조사대상, 방법, 설문조사 내용 등을 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2002년 2월 28일 처음으로 3·1절 가석방 출소자를 상대로 3개 교도소(영등포, 안양, 의정부) 출입문 앞에서 설문지를 배포하는 등으로 설문조사를 시작하였고, 또한 2002년 3월 25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동부, 남부, 북부, 서초, 성동, 종암경찰서 유치장에 대한 시설조사를 하였고, 2002년 4월 22일에는 서울, 영등포, 성동구치소와 안양, 영등포, 의정부 교도소 및 서울지방검찰청 구치감에 대한 방문조사를 벌였다. 이러한 시설조사와 병행하여 실제로 구금시설에 구금중인 피의자 및 피고인이나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접대면 방식 또는 인터넷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는 법무부 및 경찰청에 대하여 조사의 목적을 알리고 조사에 협조하여 줄 것을 사전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이러한 시설조사 및 자료 협조요청에 대하여 경찰청은 기대 이상이었으나, 법무부는 어렵게도 기대에 못미쳤다. 특히 구금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국내 행형관련 법규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수적이라 판단하고 법무부에 대하여 교정규칙 및 예규집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고 결국에는 정보공개청구까지 하였음에도 관련 자료를 입수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교정예규집을 입수하지 못하는 바람에 행형 관련 규정의 불합리한 점이나 이를 규정이 현실에 어떻게 반영 시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파악할 수 없었고, 조사기간마저 늘어지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이에 부득이 법무부에 대하여 교정규칙 및 예규 일체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법무부는 이를 규정이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이를 규정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구금시설 수용자들이 사고를 야기하거나 도주할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법무부의 거부 이유는 옹색한 변명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고, 이러한 비협조적 태도는 비정부기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조사의 한계를 실감하게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인권위원회는 당초 구금시설 전반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조사대상 기관을 서울 인근지역의 구치소 및 교도소, 경찰서 유치장, 서울지방검찰청 구치감으로 하고, 조사범위도 구금시설

내의 권리구제, 건강·의료, 징벌제도 등에 한정하였다. 실제로 시설조사에 있어서는 시설의 장의 협조 여하에 따라 사실조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으나,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비협조로 인하여 제대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설문조사의 경우에도 응답자가 모두 수용되어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이미 석방되어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경우 등도 포함되어 있어 응답자의 수용기간과 조사기간의 불일치로 인하여 응답자의 답변내용과 수용시설의 시설 및 운영실태가 다른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제약 등으로 인하여 본 조사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깊은 양해를 구한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구금시설의 실태는 과밀수용의 정도가 너무 심하여 독거시설에 수용되기 위하여 고의로 징벌을 받는 재소자가 늘어나는 실정이고, 특히 안양교도소와 같은 수용시설은 너무나 노후하여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였으며, 수용자들에 대한 권리구제, 건강·의료, 징벌제도 등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 등이 정비되어 있지 않거나 공개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의 장에 따라 시혜적으로 운용되는 문제점 등이 드러났는 바, 이에 대하여는 우선 교정예규 등을 공개하여 수용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과밀하고 노후한 구금시설 및 열악한 구금시설 관련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의 개선 등에 예산의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었다.

선진국과 후진국은 그 나라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보면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소득 1만불 시대를 맞고 있다. 이번 조사가 우리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구금시설의 수용자들에게 따뜻한 햇볕을 비추어야 할 때임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조사에 참여한 우리 모두의 바람이다.

그 동안 구금시설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한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1995년 7, 8월호 「시민과변호사」(본회 발행)에 실린 일부 구금시설에 대한 조사자료와 1998년 12월에 발간된 「한국 감옥의 현실」(천주교인권위원회·인권운동사랑방 펴냄) 정도였는데 이들 자료는 이번 조사에서 많은 참고가 되었다.

끝으로, 이번 조사를 위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재승 회장, 임영화 사업이사 및 집행부 임원, 바쁜 변호사 업무중에도 짬을 내어 설문조사에 도움을 주신 본회 회원 및 인권위원회 위원, 이번 조사를 처음부터 기획하고 마지막으로 보고서까지 작성하여 주신 구금시설조사준비위원회의 이국재 위원장, 장철우, 김희수, 이상희, 김진, 한석종 변호사, 설문지 작성 등에 도움을 주신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유해정(인권운동사랑방), 자료를 정리하고 관계기관에 연락을 하는 등 궂은 일을 도맡아 한 본회 사무국의 나정수 실장, 강명석 과장, 유남규 대리 등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02. 10.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박영립

목 차

발간사 / 박재승

이제 감옥에도 햇볕을 비추어야 / 박영립

I. 구금시설 실태조사

구치소 및 교도소 / 김희수	13
1. 구금시설 현황	13
2. 사방시설 관련 부분	14
3. 징벌 관련 시설	19
4. 의료 및 위생 관련 시설	21
5. 기타 시설	24
6. 맷음말	26
유치장 / 장철우	28
1. 머리말	28
2. 조사의 개요	29
3. 조사 결과	30
4. 평가 및 제언	47
구치감 / 한석종	51
1. 머리말	51
2. 조사의 개요	51
3. 조사 결과	52
4. 맷음말	61

II. 쟁점별 운영실태 및 정책제언

권리구제 / 이상희	65
1. 문제 제기	65
2. 권리구제 수단의 고지	66
3. 청원 및 소장 면담	68
4. 변호사의 조력	73
5. 소장 작성 등을 위한 집필	77
6. 기타	82
7. 결론과 정책제언	82
건강 · 의료 / 김희수	84
1. 문제 제기	84
2. 국내 행형법규	85
3. 설문조사 결과 및 내용	87
4. 의료현실의 개선안	91
징벌 / 김 진	97
1. 머리말-조사의 목적과 범위	97
2. 조사 내용	98
3. 결론과 정책제언	112

I . 구금시설 실태조사

III . 설문지 전문 및 조사결과

설문지 전문	117
설문조사 안내문(면담용, 반송용)	117
설문 응답자 기본사항	119
구금시설 조사설문(교도소, 구치소)	120
구금시설 조사설문(검찰청 구치감)	133
구금시설 조사설문(경찰서 유치장)	137

- 구치소 및 교도소
- 유치장
- 구치감

조사결과	143
설문 응답자 인적사항	143
교도소, 구치소 설문조사 결과	147
검찰청 구치감 설문조사 결과	168
경찰서 유치장 설문조사 결과	177

IV . 부록

본회 집행부 임원 및 인권위원회 위원명단	193
인권위원회 활동일지	194
정보공개청구서 및 소장	198
교정시설 현황자료 회신	204
관련 법규(국내 행형법 및 시행령, 독일 행형법)	211

구치소 및 교도소

김희수

1. 구금시설 현황

2001년 법무연감에 따르면 속칭 IMF 영향으로 수용인원이 급격히 증가하여 1998. 12. 7. 교정사상 최고인 74,377명(수용밀도 2.42)을 수용하는 등 한때 과밀 수용으로 인하여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 동안 검찰의 불구속 수사 확대 및 법무부의 가석방 확대 실시 등으로 2000년도에는 수용인원이 현저히 감소하여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히면서, 2000년은 전 교정시설의 총 입소인원이 130,295명, 출소인원 133,590명, 연도말 수용인원 61,346명, 연간 1일 평균 수용인원은 1990년도에는 53,169명을 수용한 이래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0년에는 62,959명(법무부 홈페이지에는 1일 평균 수용인원이 63,472명으로 밝혀 어느 통계가 맞는지 알 수는 없음)으로 전년대비 0.07% 감소하였으며 현재는 안정되어 가는 추세라고 밝히고 있다.

여성 수용자의 비율은 88년도에 1,835명으로 전체 수용자의 3.8%를 점유한 이래 증감을 반복하다가 99년도에는 3,363명으로 6%, 2000년에는 2,951명으로 4.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법무연감은 수용자 거실의 겨울철 연탄 난방 방식을 스팀 난방시설로 개선하기 위하여 의정부교도소 등 12개 기관은 금년까지 개선을 완료하였고, 수용자 거실 내 재래식 화장실을 일소하기 위하여 그 동안 성동구치소 등 31개 기관이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시설은 2003년까지 모두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이 일단 법무연감상으로는 상당한 정도의 시설 개선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점차 수용시설 내의 환경이 개선되어 수용자의 최소한 인권 보호 및 권

의 신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진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칭함)는 2001. 4. 22. 여러 준비절차를 거친 후 소속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서울·성동·영등포구치소, 안양·영등포·의정부교도소 등의 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본 보고서는 이러한 각 팀들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또한 인권위원회 변호사들이 실시하였던 위 시설조사에서 교도소장의 협조 여하에 따라 조사가 잘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였으며, 숨김 없이 시설을 공개하고 협조하였던 관계자들에게는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표하고 싶고, 비협조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관계자들에게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기도 하였다는 것도 미리 밝혀둔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어디까지나 시간적, 장소적, 특히 교도소측의 협조 여하에 따라 한계성을 지닌 조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과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기를 미리 양해 바란다.

2. 사방시설 관련 부분

가. 과밀수용 여부

우리나라 감옥하면 한 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콩나물시루 같은 수용을 누구나 떠올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일단 2001년 법무연감에서는 1일 평균 수용인원이 안정화 추세에 있다고만 밝히고 있는 실정인데, 2001년 기준 법무부 홈페이지상에는 수용정원은 총 58,000명인데, 1일 평균 수용인원은 2000년 도에 63,472명으로 밝히고 있어 일단 법무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상으로도 현재의 교도소는 정원보다도 1일 평균 5,472명의 정원이 초과 운영되고 있음이 명백하여 보인다.

구체적으로 서울구치소 재소자의 적정 수용인원은 3,200명으로 밝혔고, 최대 수용가능인원은 3,830명인데, 조사 당시 수용인원은 3,700명이었다. 수용밀도

는 하절기에는 4,200명 가량, 동절기에는 3,600명 가량 된다고 구치소측은 밝혔다.

안양교도소의 경우 700명의 재소자가 있다고 하였고, 시설이 40년 이상 경과하여 매우 낡은 시설에 시설 자체도 부족하여 상당수 재소자가 독거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나, 독거시설이 부족하여 고의로 징벌을 받고 독거 수용되는 경우 까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조사위원들은 수용시설이 과밀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특히 하절기에는 위생문제나 교도소내 사고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을 하였다.

영등포구치소의 경우 정원은 1,780명인데, 구치소측에서 정확한 인원 공개를 꺼려하였으며 현재 약 2,300명이라고 하였는 바, 2001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1. 8. 30. 현재 수용인원은 2,488명으로 밝혀졌으며, 이 중 여성 수용자가 약 200명인 것으로 말했다.

영등포교도소의 경우 정원은 1,400명인데, 조사 당시 수용인원은 1,631명으로 밝혀졌다.

의정부교도소의 경우 현재 수용인원은 1,633명으로 평당 1.81명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밝혔다.

성동구치소의 경우 정원은 1,930명인데, 현재 수용인원은 2,093명, 최대 수용인원 2,300명으로 밝혔고, 1평당 2.15명이 수용되어 있다고 말했다.

결국 조사위원들이 조사하고, 교도소 등에서 밝힌 내용대로라면 서울 인근의 구치소, 교도소는 모두 정원을 초과한 과밀수용상태에 있고, 특히 하절기에 문제가 많다는 것으로 보였다.

우리 행형법은 거실의 최저 규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혹 교정당국의 내부 지침이 있는지 알아보려 했으나, 법무부에서 공개를 하지 않아 알 수가 없었다. 독일 행형법은 일반적으로 주·야간 구금하는 독방의 경우는 $21m^2$, 창문의 너비 $1m^2$, 야간에만 구금하는 독방은 $11m^2$, 창문의 너비 $0.5m^2$ 이며, 혼거실의 1인당 면적은 주·야간 구금하는 방은 $16m^2$, 야간에만 구금하는 방은 $10m^2$ 로 규정되어 있는 바, 현재의 과밀수용에 대하여 행형당국 등이 적극적으로 참조해

야 할 항목으로 생각된다.

나. 사방의 크기, 구조 등

사방의 크기는 독거시설이 0.8평부터 1.1평짜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설이 노후된 안양교도소가 독거시설도 가장 작은 크기였고, 서울구치소 등 거의 모든 교도소와 구치소 등이 2.3평형, 3.45평형, 3.5평형, 6.06평형, 7.4평형 등 다양한 크기의 혼거시설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방의 크기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 각 수용시설이 건립되어질 때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건축됨에 따라 사방의 크기도 각 교도소, 구치소마다 다양하게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

사방의 크기가 기준이 없이 각각 틀림에 따라 어느 수용시설에 수용되느냐에 따라 결국 다른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교도소를 신설하거나 증·개축하는 경우, 통일적인 기준이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조사를 실시한 인권위원회 변호사들의 판단으로는, 대체적으로 다양한 크기의 사방에 수용된 인원들은 비좁은 상태에서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는 바, 구체적으로 서울구치소의 경우 3.45평에 평균 9명을 수용하나 14~15명을 수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안양교도소의 경우 1평당 2명 정도가 구금되어 있으나 7.4평에는 17~18명까지 수용하고 있었고, 성동구치소의 경우 기결수 혼거시설은 3.45평인데 수용인원은 9~11명이었고, 여사의 경우 4.35평에 16명까지 수용된 것이 확인되어, 특히 여름에는 위생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과밀수용으로 판단되었다.

각 사방의 구조는 거의 정사각형, 직사각형의 형태이고, 정면은 철제문, 사방내부에는 개인별 사물함과 모포 등이 비치되어 있고, TV가 설치되어 있고, 가벼운 사물정리함, 책상, 도서가 일부 비치되어 있었고, 사방 내부에 화장실과 세면실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각 구치소, 교도소별로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 냉난방 시설 등

냉난방시설의 경우 각 구치소, 교도소에 따라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었는 바, 먼저 난방시설을 살펴보면 서울구치소의 경우 각 사방에는 온돌이 설치되어 심야전력을 이용하여 온돌을 가동하고 있으며 운영상태도 적정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의정부교도소의 경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이 각 사방에 2개씩 설치되어 있었고, 성동구치소의 경우도 2001. 11.경부터 난방공사를 끝내고 축열식 난방을 실시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안양교도소의 경우 난방시설이 가장 열악한 환경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난방은 사동 1개층에 연탄 난로 1개(겨울의 경우 연탄 3개가 들어가나 번거로워 1개만 갈아넣는다고 함)만을 가동하여, 재소자들은 물론 교도관들도 겨울에 근무하는데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시급한 개선이 요청된다 하겠다.

영등포구치소와 교도소의 경우도 각 난방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사방이 마루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겨울에는 복도에 난로를 설치하고, 바닥에는 매트리스 등을 이용하고 있는 수준으로 개선이 요망되는 상태로 보고되었다.

냉방시설의 경우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구치소와 교도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여름철에는 각 사방에 선풍기 1대씩을 보급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1년도 법무연감을 보면 의정부교도소 등 12개 기관이 수용자의 겨울철 연탄 난방 방식을 스팀 방식으로 개선을 완료하였다고 하는 바, 이는 전체 구금시설에 비추어 볼 때 그 수준이 미미하여 아직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난방시설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이런 시설들이 결국은 재소자의 최소한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었다.

라. 사방 내 화장실 및 세면실

각 구치소와 교도소 내의 화장실은 점차 개선되는 상태이나 아직도 열악한 화장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 바, 안양교도소를 제외한 여타의 구치소와 교도소에는 각 크기는 일정하지는 않고 다소 비좁다는 지적은 면하기 어렵지만 약 0.4~0.5평 크기의 양변기 수세식 변기가 설치되어 있었고(사용후 수도를 틀어서 세척하는 방식을 포함), 대체적으로 사용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화장실은 반투명식 유리나 차폐막을 이용하여 앉은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안양교도소의 경우는 화장실 상태도 극히 노후되어 부식상태에 있는 데다 청결상태마저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2001년도 법무연감에는 수용자 거실 내 재래식 화장실을 일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성동구치소 등 31개 기관이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시설은 2003년 까지 모두 개선할 예정이라고 하는 바, 교도소와 구치소의 혐오시설의 대명사로 불려진 화장실은 하루 속히 개선되기를 기대하며, 점차 개선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방 내 세면시설의 경우는 전부가 화장실 내에 수도꼭지와 세면도구 등이 있어서, 다소 비좁고 불편하여도 간단한 샤워와 세면은 할 수 있는 상태이고, 청결상태도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각각 보고되었다.

마. 사방 내 조명상태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영등포구치소는 각 사방 내에 형광등 1개가 부착되어 다소 어두운 편으로 파악되어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판단되었고, 성동구치소의 경우 형광등 1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밝기는 괜찮은 편으로 보고되고, 의정부교도소 경우는 사방 내 형광등 2개가 설치되어 책을 읽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바. 목욕시설

각 구치소와 교도소의 목욕시설은 1주일에 1회씩 공동 목욕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각 사동의 샤워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각 사방 내 세면시설은 비좁기는 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특이사항은 없었다.

사. 세면도구, 침구류 등

모포는 1인당 3매까지 지급되고, 세면도구 등도 기결수는 관급으로, 미결수는 개인 구입으로 사용하고, 원하는 경우 개인 구입도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이사항은 없었다.

아. 기타

영등포구치소, 영등포교도소 등의 조사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진정함이 덩그러니 벽에 부착되어 있을 뿐 그 옆에 안내문이나 필기류 등을 설치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기도 하였고, 각 사방에 자변약품안내서, 구매자변물품목록, 수용자 준수사항, 수용자 생활 안내지침 안내문 등이 부착되어 있으나, 청원 등 불복수단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3. 징벌 관련 시설

징벌과 관련된 조사실과 징벌실 등은 각 구치소나 교도소에 따라 흔쾌히 공개를 한 곳도 있었고, 전혀 공개를 하지 않는 곳 등 각각 다른 입장을 보였다.

서울구치소의 경우는 조사실과 징벌실을 공개하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설명을 하였으며, 시설에서도 가장 많은 문제점이 있는 안양교도소의 경우도 공개

를 거부하였다.

영등포구치소의 경우 조사실과 징벌실이 구분되어 있었고, 화장실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창문은 있으나 창살이 빼곡히 설치되어 있고, 조사 당일에도 가로 1미터 세로 2미터의 징벌실에 3명이 수감되어 있었다고 보고되었고, 영등포교도소의 경우 조사실이 12개, 징벌실이 21개 있는데 크기는 가로 약 95센티미터, 세로 1미터로 공간이 너무 좁아 정신적으로 심각한 사태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조사실 일부가 내부의 전면이 보일 수 있도록 아크릴판으로 문을 만들어 철문보다는 폐쇄성이 덜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견해도 보고되었다.

영등포교도소의 경우 조사실, 징벌실 내부에 화장실, 세면실이 있고, 화장실 쪽으로 창문이 있는데 창살이 촘촘히 있는 상태로 보고되었고, 성동구치소의 경우 조사실이 상담실, 고충처리전담실과 함께 있었고, 2개 방의 상담실의 크기는 5평 남짓하고, 일반적인 상담실처럼 책상이 있고, 조명상태나 구조 등에서 피조사자를 압박할 만한 요인이나 시설은 보이지 않았으며, 징벌실의 크기는 1.06평으로 일반 사방과 비슷한 크기로 화장실과 수도꼭지가 있고, 채광창 등에서 일반 사방과 다르지 않으며, 단지 서신, 접견, 운동만 제한된다는 구치소측의 설명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의정부교도소의 경우는 조사실이 징벌실과 근접 위치하여 있고, 크기는 3.31평, 조명상태는 양호하고, 창문도 개방형으로 일반 사방과도 다르지 않으며, 징벌실은 1.31평 크기의 독거수용시설로, 내부에는 칸막이 구분 수세식 화장실과 세면시설이 있고, 조명 및 환기상태도 양호하고, 평상시에는 침구류가 비치되어 있지 않고, 취침시간에 반입하여 주는 형태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로, 청결상태도 양호하고 기타 수감자의 인권을 침해할 만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조사실과 징벌실을 공개한 구치소와 교도소의 경우 시설 자체로는 다른 사방과 특별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나, 시설 공개를 거부한 곳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었다.

4. 의료 및 위생 관련 시설

가. 의무과와 병사

의정부교도소 경우 의무과와 병사는 사동 내에 위치하여 있고, 여사동에는 별도로 있지 아니하며, 여성들의 경우 진료가 필요하면 의무과를 찾아오고, 여사에는 간호사 1명이 따로 상주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었고, 여타의 교도소와 구치소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체제였으며, 의정부교도소의 경우는 전염성 질병 환자들에 대한 격리병동이 따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상태였고, 영등포구치소의 경우 여사에는 신입실에서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고 있는 상태였다.

서울구치소 병사 수용가능인원은 150명으로, 조사 당시 병사 및 요양동에 남자 92명, 여자 8명이 수용되어 있었고, 영등포구치소, 안양교도소 등은 공개를 거부하였으며, 성동구치소의 경우는 병사 8개방, 조사 당시 수용인원은 33명이었고, 의정부교도소의 경우 수용가능인원은 90명, 현 수용인원은 62명으로 공개하였고, 영등포교도소의 경우는 병사가 7개 거실로 되어 있는데, 현 수용인원이 67명으로 수용인원이 부족한 상태라고 관계자들이 진술하였다.

나. 의료장비 및 의약품

의료장비의 경우 시간적 ·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으로 이를 일일이 확인 조사하는 것은 거의 어려운 조사였으며, 부록에 실은 자료와 같이 2002. 7. 16. 법무부에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교정시설현황자료 요청에 대해서 회신을 해왔는 바, 이 자료를 첨부하기로 한다.

의정부교도소의 경우 의무과장은 약의 종류는 약 100여 종, 주사제 등 30여 종류가 있으나, 전문의약품은 턱없이 부족한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술하였다.

현재 각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구비하고 있는 각종 의약품과 의료시설에 대하여는 차후 전문가와 의사협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고, 최소한 기준과 원

칙을 먼저 확립하고 점차 외국의 사례처럼 일반 사회의 병원과 다름없는 시설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다.

다. 의료인의 현황 등

법무부에서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2002. 7. 16. 현재 서울·성동·영등포구 치소, 안양·영등포·의정부교도소에 각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력 현황은 별첨 한 자료와 같다.

법무부에서 밝힌 자료상으로 보아도 서울·성동구치소, 안양교도소의 각 경우에는 정원보다도 의사 1명씩이 각 부족한 상태로 나타나고, 영등포구치소와 교도소, 의정부교도소에는 약사가 1명도 없으며, 영등포구치소, 안양·영등포·의정부교도소는 방사선사가 1명도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안양·영등포·의정부교도소와 영등포구치소의 경우에 설치되어 있는 의료 장비에는 X-Ray 직촬기, X-Ray 현상기, 치과 X-Ray기 등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방사선사가 없어서 전혀 장비를 운용할 수 없는 상태임이 확인되어 오히려 국가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도 면할 수 없는 상태라고 근무중인 의무과장 등이 실정을 토로하는 곳도 있었다.

의정부교도소의 경우 의사 1명이 1일 약 300명의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성동구치소의 경우도 1일 진료인원이 120명, 투약인원은 400~500명이 이른다고 밝혔다.

치과 의사가 상주하고 있는 곳은 조사대상 중 한 곳도 없었으며, 영등포구치소의 경우 1주일에 2번 와서 치료를 한다고 하고 있고, 성동구치소의 경우도 자원봉사 치과 의사가 1주일에 2회 치료를 하고 있고, 의정부교도소도 자원봉사 치과 의사가 1주일에 1회 치료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 바, 의료예산으로 치과 의사를 고용할 수 없다면 최소한의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정신과 의사가 상주하고 있는 곳은 조사대상 중 한 곳도 없었으며, 조사대상

중 안양교도소의 경우 정신과 의사가 1주일에 1회씩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라. 정기진료

의정부교도소의 경우 매분기별로 정기적인 결핵 X-Ray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고, 서울구치소는 정기진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성동구치소의 경우 서울지방교정청에서 분기마다 1회씩 순회진료를 통해 수용인원의 1/4 을 진료한다고 밝혔는 바, 본 보고서의 건강·의료부분의 내용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마. 외부 병원진료

법무부는 2001년도에 서울구치소의 경우 344명, 안양교도소의 경우 288명, 영등포구치소의 경우 215명, 성동구치소의 경우 113명, 영등포교도소의 경우 306명, 의정부교도소의 경우 248명이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회신하였다.

그런데 서울구치소측은 1일 2명, 안양교도소의 경우 1일 3명, 영등포교도소의 경우 1일 2~3명, 성동구치소의 경우 1일 3~4명으로 각 밝혀 실제 외부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법무부 회신 내용보다 더 많다는 것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외부병원진료 절차는 의사가 판단하여 결정한다고 구치소 등의 각 관계자는 밝혔으며, 의정부교도소 등의 경우 야간에는 당직 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외부진료를 한다고 밝혔다.

외래진료의 경우는 기결수의 경우 국가 부담, 미결수의 경우는 본인 부담이 원칙이라고 밝혔고, 본인의 부담 능력에 따라 미결수의 외부진료에도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며, 기결수라도 예산상 제한으로 자비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의정부교도소의 경우 외부 의사의 진단서와 처방전에 의거하여 약을 반입하면 의무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 배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마약사범들은 외부 약 반입이 금지되고, 외부 약 복용자는 보통 당뇨와 혈압환자들이 다수라고 밝혔는 바, 여타의 다른 구치소, 교도소의 경우도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여진다.

의정부교도소 관계자는 수감자가 병 치료를 위해 자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전문의약품과 의료진이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단 시설조사 결과만을 놓고 볼 때는 외부병원 치료가 용이한 것으로 일응 볼 수도 있으나, 설문조사 결과와는 상당히 다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건강·의료부분 참조).

바. 침구류 등 세탁과 소독

성동구치소와 의정부교도소의 경우 관용 지급 담요 등의 세탁은 3개월에 1회 씩 세탁과 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고, 개인별 소지 침구류 등은 세탁이 자유로운 것으로 밝혔고, 의류 세탁의 경우도 각 사방 내 세면실 등을 이용하여 자유스럽게 세탁이 가능하고, 세탁물 건조의 경우도 각 사방 내 설치된 시설 혹은 외부 빨래건조대 등을 이용하여 자유스럽게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으며, 실제 조사자들에게도 세탁 등의 경우는 자유스럽게 하는 것으로 보여졌고, 청결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보여졌다.

5. 기타 시설

가. 교도소 안의 접견 및 서신 등에 관한 사항 등 수용생활에 필요한 권리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권 등을 기재한 문서가 부착되어 있는지, 부착 되어 있다면 적정한지 여부

조사한 각 구치소와 교도소에는 이러한 권리에 필요한 문서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서울구치소의 경우는 조사시 별로 눈에 띠지 않았고, 안양교도소의 경우도 쉽게 발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영등포구치소와 영등포교도소 조사자들은 진정함만이 덩그렁 벽에 붙어 있어 실효성을 의심스러워하고, 청원 등 불복수단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다는 비판을 제기한 반면, 성동구치소와 의정부교도소의 경우는 적절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나. 도서함이나 사방 내 적절한 곳에 법전이 비치되어 있는지

조사된 모든 시설 내에 법전이 공용으로 비치되어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재소자들의 권리의식을 위해서라도 법전의 비치는 반드시 필요 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운동시설

의정부교도소, 성동구치소의 경우 대형운동장, 소형운동장 등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보였고, 간단한 족구시설 등이 있었으며, 마약류 사범들을 위한 별도의 체력단련실이 각종 운동기구를 갖춘 채 운영되고 있었다.

라. 기타 시설

의정부교도소 등의 경우 컴퓨터교육, 언어교육 등의 실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재소자의 사회 복귀를 돋는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목격, 확인한 점은 향후 수용시설과 운영에 대한 희망의 쪽을 보는 것 같다는 보고도 있다.

6. 맷음말

일단 교도소측의 협조여부 및 장소적·시간적 한계성을 지닌 조사였으나,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최초로 시도되었던 이번 조사는 의미있는 것으로 자평하여도 좋을 것 같다.

「한국 감옥의 현실」(도서출판 사람생각, 이하 '설문조사'라 칭함)에서 확인되었던 내용들과 이번 현장조사를 비교하여 본다면, 우선 수용밀도면에서는 설문조사 당시인 1997년, 1998년 초의 상황보다도 인권위원회 조사 당시가 더 개선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않았고, 감방의 조명상태는 설문조사 당시는 거의 백열등으로 파악되었는데 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형광등으로 전부 교체되어 개선된 것으로 보였으며, 화장실의 경우 설문조사에서는 재래식이 47%로 파악되었으나 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거의 수세식 화장실로 바뀌어 있어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으로 파악되었고, 난방시설에 대하여는 설문조사에서는 약 80%가 난방이 되지 않는다고 파악되었는데 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로는 안양교도소를 제외하고는 난방시설이 개선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사방 내에 시설물에서도 책상, 개인 사물함 등이 대다수 설치되어 있어 설문조사 당시와는 다르게 개선된 면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과밀수용이라는 점은 여전히 개선이 요구되는 면이고, 우리 행형법 제11조에서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혼거수용은 소장이 시설 등의 사정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혼거 수용할 수 있다(행형법 시행령 제31조)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제 상황은 혼거수용이 원칙이고, 독거수용은 예외로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어져 있는 점도 재소자의 프라이버시와 최소한의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보여졌다. 특히 안양교도소 등과 같은 수용시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재소자 중에 독거시설에 수용되기 위하여 고의로 징벌을 받는 일은 참으로 어느 시대에서 가능한 일인지 개탄스러운 면도 보고되었다.

국제연합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10조는 피구금자가 사용

하도록 마련된 모든 설비, 특히 모든 취침설비는 기후 상태와 특히 공기의 양, 최소 공간, 조명, 난방 및 환기에 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함으로써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의미는 수용시설이 피구금자의 건강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데 있고, 모든 요건이란 요건이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원칙은 재소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인 것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시혜적인 관점에서 수용시설을 바라보던 시각을 바꾸어 최소한의 재소자들의 인권이고 권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최소한의 수용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당국자들도 기울이는 한편, 시설을 최대한 지혜롭게 운영하는 교정당국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비록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형별의 구체적인 집행 방법도 법정되어야 한다는, 즉 행형법정원칙(行刑法定原則)이 이제는 전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치장

장 철 우

1. 머리말

범죄 혐의 있는 자를 체포·구속하여 유치장에 유치하는 목적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방지 등 수사 및 재판상의 절차를 확보하는 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장에의 유치는 실질적으로 형의 집행과 유사한 결과를 낳는다.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고, 유치되기 전의 생활과 다른 생활이 강제되고, 유치장이라는 주어진 환경 내에서만 생활해야 하며, 심리적 불안정과 육체적 불편도 따르고, 방어권 행사를 위한 자유로운 활동도 제약을 받는다.

하지만 유치인은 수형자가 아니라 무죄가 추정되는 자이기에 그와 같은 제한은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최대한 일반인의 생활상태와 유사한 생활이 가능하게 해주어야 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피의자로서의 적정한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유치장 현실은 어떠한가.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그 동안 문제되어 온 유치장 화장실의 인격권 침해와 알몸 신체검사 관행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다.¹⁾

경찰도 2001년에 소위 '유치장 환경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유치장의 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1)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546 결정;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51466 판결; 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헌마327 결정

이에 현 경찰서 유치장의 시설과 그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국제 기준 및 우리나라 행형법규 등에 비추어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조사의 개요

가. 조사 방법

경찰서 유치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법(시설조사)과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된 적이 있는 자들을 상대로 설문지에 의해 조사하는 방법(설문조사)을 병행하였다.

나. 조사 시기

- 1) 시설조사 : 2002. 3. 25. 10:00~12:00
- 2) 설문조사 : 2002. 2. 15. ~ 2002. 7. 10.

다. 조사 대상

- 1) 시설조사 :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남부, 동부, 북부, 서초, 성동, 종암경찰서 유치장
- 2) 설문조사 : 응답자 78명

라. 조사자

- 1) 시설조사 : 북부, 종암 : 김희수 등 인권위원 2인
동부, 성동 : 이상희 등 인권위원 3인

남부, 서초 : 한석종 등 인권위원 4인
2) 설문조사 : 인권위원회 위원, 당직변호사, 국선변호인, 본회 회원,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마. 조사 내용

경찰서 유치장에 대한 시설조사 및 설문조사의 내용은 각각 3장의 설문지 전문 및 조사결과에 수록된 바와 같다.

3. 조사 결과

가. 유치장의 구조·설비

시설조사 대상 경찰서 중 북부경찰서, 종암경찰서, 성동경찰서, 서초경찰서, 남부경찰서는 유치장 구조가 복층(1, 2층)이고, 동부경찰서는 단층이었다. 유치장 내부는 출입구 맞은 편에 5~6개의 유치실이 부채꼴 또는 'ㄱ'자 형으로 나열되어 있고, 유치실 앞에 약간의 공간을 두고서 건너편에 경찰관(간수) 근무장소가 있고, 그 좌우로 신체검사실, 면회실, 목욕실(샤워실)이 있었다.

유치장의 전체 내부면적은 경찰서마다 달랐는데, 건물이 오래된 유치장은 좁고 최근 신축된 건물의 유치장은 넓은 편이었다. 가령 2000년 12월에 신축한 건물인 북부경찰서는 1, 2층 연면적이 약 173평인 반면 1968년 건물로서 단층인 동부경찰서는 20평 정도밖에 안 되었다.

나. 실내환경(청결, 조명, 환기, 냉난방)

1) 유치장의 실내환경은 유치인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에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엔 유치장의 실내환경에 관하여 규정한 법이 없다.

유치장을 미결구금실에 준하도록 하고 있는 행형법²⁾도 미결구금실의 환경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경찰이 훈령인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에 관련규정을 두고 있긴 한데, 그것도 유치인의 건강을 위해 통풍, 채광, 구획, 면적, 설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거나 유치장 내부는 밝은 색으로 도색하고 환기통, 변소 등의 시설을 수시로 점검 보완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난로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정도의 일반적 규정에 불과하다.

2) 청결상태

시설조사시 조사 대상 경찰서의 유치장 모두 양호한 청결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는 '너무 더러워서 불쾌했다'는 답을 한 자가 응답자 78명 중 16명(21%)이나 있었다. 전체 유치장 중에는 청결유지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조명상태

시설조사 대상 유치장들은 대체로 자연채광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대부분 실내 밝기를 인공조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유치실 밖보다 유치실 안이 어두운 편이었다. 그러나 유치인들은 적응이 되어서인지 독서나 생활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설문조사에서는, '너무 어두워서 생활하기 불편했다'고 답한 자가 67명 중 19명(28%)이나 되었다.

전체 유치장 중에는 실내가 어두워 생활에 불편한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환기상태

2) 행형법 제68조

시설조사 대상 유치장들은 각기 환기구나 환기시설, 공기청정기 등을 시설하여 두고 있었으나 조사 당시 일부 경찰서 유치장의 경우는 환기가 잘 안 되는 지 실내에 역겨운 냄새가 있었다.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78명 중, '환기가 되지 않아 악취가 심했다'고 답한 자가 22명(28%)이나 되어 상당수 유치장이 환기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5) 냉난방상태

시설조사 대상 유치장 모두 각기 냉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었고, 유치실 바닥도 일부 경찰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일러식 온돌시설이 되어 있었다.

각 유치장들이 갖추고 있는 냉난방 설비와 기기는, 서초경찰서는 냉난방 겸용 기기 6대, 남부경찰서는 대형 냉방기기 1대와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동부경찰서는 냉온풍기 1대, 중앙집중식 난방시설과 온풍기 1대, 성동경찰서는 중앙집중식 냉방시설과 대형 선풍기 1대, 냉온풍기 1대, 북부경찰서는 중앙집중식 냉방 시설과 냉방기 2대, 종암경찰서는 대형 냉방기 1대, 대형 선풍기 3대와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등이었다. 조사 당시에 그 설비나 기기들이 가동되지 않고 있어서 동·하절기 가동시의 냉난방 효과 등에 대해선 확인할 수 없었지만 유치장의 구조와 냉난방 설비와 기기의 위치, 용량, 그리고 통상적으로 정해진 시간에만 가동시키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특히 복층 구조의 유치장에서는 2층에 대한 냉난방은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졌다.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78명 중 '일체의 냉방시설이 없다'거나 '냉방시설이 있었으나 틀어주지 않았다'고 답한 자가 15명, '일체의 난방시설이 없었다'거나 '난방시설이 있었으나 틀어주지 않았다'고 답한 자가 14명이 있었다.

전체 유치장 중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있는 유치장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유치실 바닥에 온돌이 설치된 곳도 온돌용 보일러의 가동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특히 동절기의 보일러가 가동되지 않는 시간에는 바닥이 차고 춥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 유치실

1) 크기, 정원

시설조사 결과, 유치실 1개의 크기는, 성동경찰서는 약 6평, 북부경찰서는 약 5~6평, 종암경찰서는 약 5평, 남부경찰서는 약 4평, 서초경찰서는 약 3~4평, 동부경찰서는 약 2~4평이었다. 특히 동부경찰서의 경우 원래의 유치실 1개를 반으로 나누어 그 하나를 여성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유치장을 미결수용실에 준하도록 한 우리 행형법은 미결수용실의 거실 크기와 정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경찰의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이 '유치실의 면적은 6.6평방미터 또는 13.2평방미터를 표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긴 하나, 여기에도 정원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러다 보니 수용 정원을 경찰서마다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고, 따라서 언제든지 과밀수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었다.

2) 분리 유치

시설조사 대상 유치장들은 6개 내지 12개의 유치실을 크게 여성용, 남성용, 자해방지용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국제연합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³⁾(이하 '최저기준규칙'이라 함)은 피구금자를 그 성별, 연령, 범죄경력, 구금의 법률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분리된 시설 또는 시설내의 구역에 수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특히 남자와 여자는 가능한 한 분리된 시설에 구금하고 함께 수용하는 경우에도 여자용으로 할당된 설비 전체를 완전히 분리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우리 행형법도 여자와 남자의 격리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유치장의 현실은 남자와 여자를 같은 공간에 유치하고 있고, 단지 유치실만 따로 하고 있을 뿐

3) 1955. 8. 30. 제1회 국제연합 범죄방지 및 범죄자 처우회의에서 채택되고 1957. 7. 31. 국제연합 경제 사회이사회 결의 663 c(24)로서 승인됨.

이다. 그러다 보니 남녀가 좁은 공간에서 내부시설을 함께 사용하여야 하고, 남녀의 유치실이 서로 들여다 보이는 관계로 정상적인 생활이 사실상 억제당하기 쉽고, 특히 다른 이성이 인식할 수 있는 곳에서 신체검사를 당하고 화장실과 목욕실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수치심과 굴욕감 등의 인격권을 침해당하는 문제가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유치실이 여성용과 남성용이 서로 보이는 구조여서 수치감을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56명의 응답자 중 14명(25%)이 '그렇다'고 하였고 '화장실 벽(칸막이)이 낮아서 수치심을 느꼈다'는 답도 있었다.

3) 유치실 창살

우리나라 유치장은 유치실의 전면을 쇠창살로 만들어 안에 있는 유치인들을 밖에서 감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감시·통제의 효율성에만 치중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유치인의 자유로운 생활을 억제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의 경우는 이러한 점 때문에, 종래의 부채꼴 설치 형태를 병렬형으로 고치고 유치실의 전면을 불투명한 판으로 차단하여 앉은 유치인의 머리만이 보이도록 함으로써 간수로부터 유치인이 상시 감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⁴⁾

4) 화장실, 세면실

가) 유치실마다 한쪽에 화장실과 세면실이 시설되어 있는데, 화장실과 세면실이 함께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유치실 양쪽 모서리 부분에 따로 시설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화장실에는 수세식 좌변기나 양변기가 1개씩 설치되어 있고, 세면실에는 수도꼭지 1~2개와 세면기나 물을 받을 수 있도록 콘크리트 시설이 되어 있었고, 그런 시설이 없는 곳에는 대야가 비치되어 있었다.

나) 시설조사 당시의 화장실 및 세면실의 청결상태는, 일부 유치장을 제외하

4) 「경찰학연구」, 2002년 1월호, 경찰대학교, 247쪽

고는 대체로 양호하였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는, 화장실의 위생상태에 대한 응답자 69명 중 7명(10%)이 '사용하기 싫을 정도로 더러워 불쾌했다'고 답을 하여 청결 유지가 좋지 못한 유치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다) 또 화장실에는 바닥으로부터 80센티미터 내지 1미터 높이의 차폐막이 설치되어 있고, 그 윗부분은 개방된 상태여서 용변 과정이 밖에서 보이게 되어 있었다. 그런 관계로 수차 인격권 침해가 논란이 되어 왔는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보통의 평범한 성인인 유치인들에게 내밀한 신체부위가 노출될 수 있고 역겨운 냄새, 소리 등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용변을 보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⁵⁾

위 헌법재판소 결정을 전후한 시기에 화장실 차폐막에 많은 개선이 있었으나, 현재의 상태로도 여전히 옷을 벗고 입는 과정이 밖에서 보이고, 냄새와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수치감, 당혹감, 굴욕감과 다른 유치인들의 불쾌감, 역겨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에서는, '화장실 차폐막이 설치되어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자가 14명, '설치되어 있지만 수치심을 느낄 만큼 낮았다'고 답한 자가 32명이었다. 차폐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답한 자 중에는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유치되었던 자들이 포함되어 있어 현재의 차폐막 유무상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적어도 '설치되어 있지만 수치심을 느꼈다'는 자가 32명이나 된 것은 차폐막의 개선 이후에도 여전히 수치심 유발의 문제는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할 것이다.

라)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유치실 안의 화장실 사용은 자유롭고 화장실이 유치실 밖에 있는 경우에도 경찰관의 허락을 받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5)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546 결정

그러나 '계구를 착용했던 유치인의 경우 화장실에 갈 때 계구를 풀어주었는가'의 질문에 대해 응답자 18명 중 '그렇다'고 답한 자가 6명, '아니다(계구를 착용하고 용변을 보아야 했다)'라고 답한 자가 8명, '경우에 따라 달랐다'고 답한 자가 2명이었다. 응답한 자들이 왜 계구 착용을 해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화장실 이용시까지 계구를 풀어주지 않은 것은 지나치게 비인도적인 처사가 아닌가 한다.

라. 신체검사

1) 현재 모든 경찰서는 유치장 내에 신체검사실을 두고 유치인의 입감시나 재입감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시설조사 결과, 신체검사실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별도의 방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유치장 내의 일부 공간을 커튼이나 사물함 등으로 막아서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크기도 대체로 협소하고, 탈의실로 함께 사용하는 곳도 있었다.

2) 그 동안 유치장에서의 과도한 알몸 신체수색이 문제되어 왔다. 특히 옷을 벗게 하고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케 하거나 손으로 항문을 벌리게 하는 방법으로 관행적으로 행해져 온 신체검사 방법은 유치인의 명예를 손상하고 극심한 수치심을 유발시켜 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설문조사에서도 '신체검사시 수치심을 느꼈다'는 자가 전체 응답자 78명 중 25명(32%)이나 되었다.

위 응답자들은 수치심을 느낀 이유로 '알몸으로 신체검사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 '알몸으로 검사받고 항문을 손으로 까라고 했기 때문', '비밀스런 곳이 모두 노출되기 때문', '발가벗기는 것', '신체검사시 집단적 탈의', '옷을 벗어 보였다', '타인에게 인권을 무시당하는 것 같았다', '사람 있는 데서 나 홀로 옷을 벗는 게 부끄러웠다', '공포 분위기 하에 알몸 수색을 하여 인간적 모욕감·모멸감', '죄인 취급하면서 명령적으로 옷을 벗으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겁을 줄 때', '하의 내리고 항문검사를 하는 것에 수치심을 느꼈다', '속옷을 다 벗어야 했다', '알몸 수색', '항문을 까라고 했을 때', '가혹한 행위', '아랫복을 벗기고 항문을 까게 했을 때', '조사를 받고 오면 항상 알몸 수색을 하려 했을 때' 등을 들었다.

3) 경찰은 위와 같은 관행적인 알몸 신체수색의 근거로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을 내세워 왔다. 즉 위 규칙에 '구속영장발부자, 살인·강도·강간·방화·마약류·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한 사범, 반입금지물품 휴대 의심자, 기타 자해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흥기 등의 소지에 대해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갖는 데에 불과하고 법규적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것이라 하여 모든 방법의 신체검사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위 규칙에서 정밀신체검사의 대상으로 열거된 반입금지물품 휴대 의심자나 자해우려 있는 자인지 여부에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고, 위 규정이 있다 하여 정밀신체검사를 당연시하거나 필요성에만 치중할 경우 정밀신체검사가 남용될 수 있고 그 방법 또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행해져 유치인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해 웃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결⁶⁾과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⁷⁾이 있었는데, 먼저, 대법원은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해져야만 하고, 특히 수용자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의 신체검사는 다른 방법⁸⁾으로는 은닉한 물건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6)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51466 판결

7) 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헌마327 결정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 신체수색은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모욕감과 수치심을 안겨주는 행위로써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해 유치장에서의 신체검사 방법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되나, 신체검사의 시기,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현 행형법규 하에서는 신체검사가 여전히 남용되거나 과도한 방법으로 행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어렵다.

마. 급식

현재 유치장에서는 1식 3찬의 관식이 제공되고 있다. 경찰의 '유치인 관·사식 급식 방법 개선방안'에 의하면, 1끼의 식료비 단가는 867원, 1일 2,600원이다. 이는 종전의 1끼 760원, 1일 2,280원보다 14% 정도 인상된 것이긴 하나, 일본의 유치장 관식과 비교하면 1/4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한 끼에 나오는 반찬의 수가 다섯 가지나 되고, 그것도 매번 종류가 다르다. 그리고 자격있는 영양사가 정기적으로 영양의 밸런스를 체크하고, 유치인 1인당 1일 식료비 단가가 1998년 현재 1,122엔으로서 한화로 1만 1천원 정도이고, 1끼에 3,700원에 해당된다.⁹⁾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관식의 질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찬의 수는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였다가 응답자 78명 중 57명(73%)이었고, 반찬 종류에 대해서는 '김치' (12명), '짠지' (9명), '단무지' (28명), '김치 또는 단무지' (11명) 등이었다. 반찬의 수가 너무 적고 질도 매우 낮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8) 외부로부터의 관찰, 촉진에 의한 검사, 걸옷을 벗고 가운 등을 걸치게 한 상태에서 속옷을 벗어서 제출하게 하는 등

9) 「경찰학연구」, 2002년 1월호, 경찰대학교, 248쪽

보니 '질이 형편없어 돈을 주고 사먹었다'는 자가 47%(37명)나 되었다.

바. 침구

유치장마다 유치인들에게 침구가 제공되고 있었는데, 서초경찰서와 북부경찰서는 1인당 담요(모포) 3장, 남부경찰서와 종암경찰서는 유치인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담요, 동부경찰서는 담요, 이불, 베개, 성동경찰서는 담요와 베개 등이었다.

그런데 위 침구들에 대한 세탁은 자주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당시 담당 경찰관에 의하면, 2개월에 한 번 한다는 유치장도 있고, 1년에 한 번 한다는 유치장도 있었다. 세탁이 안 된 채 장기간 여러 유치인들이 사용한다면 청결상태는 물론 유치인의 위생에 좋을 리가 없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유치인이 새로 들어올 때마다 이불 커버를 새 것으로 교환해 주고 소독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¹⁰⁾ 그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유치장의 침구 관리는 매우 비위생적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 개인 위생

1) 세면·목욕

시설조사 결과 대부분 유치장은 유치인의 세면을 위해 유치실 안쪽에 세면실을 두고 있고, 목욕(샤워)을 위해 유치실 밖에 목욕실(샤워실)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의하면, '유치장에서 세수와 목욕(샤워)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응답자 68명 중 12명만 '언제나 자유롭게 씻을 수 있었다'고 답하였다.

10) 「경찰학연구」, 2002년 1월호, 경찰대학교, 247쪽

그 외에는 '정해진 시간에만 자유롭게 씻을 수 있었다' (5명), '씻는 것은 직원들 마음대로였다' (5명), '세면시설은 있었지만 목욕(샤워)시설은 없었다' (34명), '자유롭게 씻을 수는 있었지만 세면용품을 지급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 외에는 씻을 수 없었다' (1명), '요청하면 되도록 오후시간을 이용하여 씻을 수 있게 해주었다' (2명)고 하여 전체 유치장 중에는 아직 샤워실이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갖추어져 있더라도 이용시 허락을 받아야 하거나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세면용품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사실상 자유로운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양치질의 경우 '하루 몇 번 양치질을 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68명 중 25명이 '세끼 식사 후 모두', 19명이 '아침과 저녁 두 번'이라고 하였지만, '한 번' (16명) '한 번도 없었다', '양치 용구를 주지 않아 한 번도 할 수가 없었다', '양치질이 허용되지 않았다' (각 1명)고 답한 자도 있어 유치인이 원하는 대로 양치를 할 수 없는 유치장도 있음을 보여준다.

온수의 경우도 대부분 유치장이 공급시간을 정해 놓고서 공급하고 있고(보통 아침, 저녁 두 차례) 심지어 아예 공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동절기에는 세면과 목욕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였다.

또한 유치인에게는 세면용품이 지급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것은 큰 문제였다. 세면용품이 지급되지 않다 보니 대부분의 경우 면회자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반입하여 사용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종전에 유치된 자들이 사용하다가 두고 간 것을 사용하거나 아예 세면 등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국가가 무죄가 추정되는 자를 수사와 재판상의 절차 확보라는 필요 때문에 강제적으로 유치를 하고서는 최소한의 세면용품조차 지급치 아니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세면용품이 지급되는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된 미결 구금자와 비교하여 보아도 형평상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면도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자해 등의 위협이 적은 전기 면도기조차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 아닐 수 없다.

2) 세탁

현재 유치장은 세탁을 하거나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어 사실상 세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유치인은 면회자가 옷을 넣어주어야 입던 옷과 갈아입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유치인은 유치기간 내내 속옷조차 갈아입지 못한 채 지낼 수 밖에 없었다. 유치인의 70% 가량이 5일 이상 유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옷을 세탁하거나 갈아입지 못한다면 위생과 건강에 좋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일본의 경우는 세탁장을 별도로 두고 자동세탁기와 세탁물 건조기까지 두어¹¹⁾ 유치인이 언제든지 자신의 의복을 세탁하여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 운동

1) 행형법은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 유지에 필요한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찰의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도 유치인에게 수사 및 유치인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적당한 시간을 택하여 일광욕과 간단한 운동을 시키도록 하고 있다.

2) 그러나 시설조사 대상 경찰서에는 유치인이 운동이나 일광욕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운동이나 일광욕을 시키고 있지 않았다.

종일 유치장 내에서 생활하여야 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야 하는 유치인에게 전혀 운동이나 일광욕을 시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의 경우에는 유치장 내에 운동장을 마련해 두고, 매일 30분 이상 문밖에서 운동이 가능하며 이 때에 꾹연도 허용하고 있다.¹²⁾

11) 「경찰학연구」, 2002년 1월호, 경찰대학교, 246쪽

12) 「경찰학연구」, 2002년 1월호, 경찰대학교, 248쪽

자. 의료

1) '최저기준규칙'은 모든 구금시설에서는 정신의학 지식을 가진 1명 이상의 자격있는 의사와 자격있는 치과의사의 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행형법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단지 경찰의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에 유치장 내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품을 상비하도록 하고, 유치인이 발병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유치실에 따로 수용하거나 의료시설이 있는 장소에 수용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2) 시설조사 결과 대상 경찰서의 유치장들은 모두 상비약을 비치해 두고 있었다. 그러나, 내부에서의 정신과의사나 치과의사의 진료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고, 응급시의 치료체계도 충분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설문조사에서도 '유치장에서 아팠을 때,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였느냐'는 질문에 응답을 한 68명 중 '그렇다'고 답한자가 8명, '아니다'라고 답한자가 10명, '아픈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고 답한자가 42명이었다. 유치장 내에서 몸이 아픈 경우에 무시되거나 사실상 의사의 진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차. 독서, 신문구독, TV시청

1) '최저기준규칙'은 피구금자는 신문, 정기간행물 등의 열독과 방송 청취가 가능하여야 하고, 모든 구금시설은 오락적·교육적인 도서를 충분히 비치한 도서실을 갖추어야 하고 피구금자들이 이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권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행형법도 수용자는 자비부담으로 신문 또는 도서의 구독 및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신문이나 도서의 내용이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때에는 구매와 열람을 허가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시설조사 결과, 조사 대상 경찰서 모두 유치실 내에 도서를 비치하고 있고 유치인의 독서도 가능하였지만, 신문구독은 유치장에 따라 불허하거나 제한이 가해지고 있었고, TV의 시청은 대부분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하게 하고 있었다.

신문의 경우 남부·서초·종암경찰서는 구독은 물론 열람도 불허하고 있었고, 성동경찰서는 유치인이 요청하면 구독이 가능하고, 북부경찰서는 경찰서에서 구독하는 신문만 구독이 가능하며, 종암경찰서는 개인 구독은 불허하지만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는 신문은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유치장 내에서 일반 서적의 반입과 독서가 가능하였는지'에 대해 응답자 63명 중 '그렇다'고 답한자가 35명, '아니다'라고 답한자가 14명, '가능하지만 일반 서적의 반입에는 여러 제한요건이 있었다'고 답한자가 14명이었다. 일반 서적의 개인 반입이나 독서가 불가능하거나 제한을 받는 유치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문구독과 관련하여서도, '유치장 내에서 신문을 구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응답자 66명 중 '그렇다'고 답한자는 9명뿐이었고, '아니다'라고 답한자가 52명(67%), 그 외에 '가능하긴 했지만 부분적으로 삭제되어 들어왔다', '가능했지만 신문을 볼 수 없다는 등 계속적인 제약과 싸워야 했다'는 자가 각 3명, 1명이었다. 신문구독은 대부분의 유치장에서 불가하거나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카. 권리고지 등

1) 권리고지 및 권리내용 부착

설문조사를 통해 '유치장 입감시 피의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고지받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본 바, 응답자 64명 중 '아무 것도 고

지받지 못했다'는 자가 41명(64%)이나 되었고, 고지받은 것이 '변호사접견권' 이었다는 자가 17명, '법률구조공단제도'라는 자가 1명, '변호사접견권과 법률구조공단제도' 였다는 자가 2명, '변호사접견권과 당직변호사제도' 였다는 자가 2명, '변호사접견권과 당직변호사제도와 법전의 활용가능성', '변호사접견권과 법률구조공단제도와 당직변호사제도와 법전의 활용가능성' 이었다는 자가 각 1명이었다.

아직 유치인의 절반 이상이 변호인접견권조차 고지받지 못하고 있고, 권리에 관하여 상세하게 고지를 받는 경우는 겨우 2~3%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설조사 대상 유치장에는 위와 같은 권리나 제도에 관한 내용이 유치인들이 알 수 있도록 부착되어 있지도 않았다. 유치장 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안내문만 부착되어 있고, 피의자의 그 외 권리에 관한 아무런 안내문도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2) 법전과 관련 서적 비치

'법전이나 피의자 권리와 관련한 도서를 유치장측에 요구하면 볼 수 있었는지'의 질문에 대해 응답자 58명 중 '그렇다'고 한 자가 11명, '아니다'라고 답한 자가 20명(34%), '가능하긴 했지만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답한 자가 3명,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요구한 바 없다'는 자가 4명이었다.

다시 '아니다'라고 답한 응답자들을 상대로 '법전의 구매를 시도해 본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구매를 시도하여 구입할 수 있었다'는 자가 1명, '구매를 시도했으나, 결국 구입하지 못했다'는 자가 3명, '구매를 시도해 본 적이 없다'는 자가 19명(위 응답자들 중에는 위 질문에 무응답하였던 자도 포함되어 있음)이었다.

시설조사시 법전이나 권리 관련 서적의 유치장 내 비치 여부를 확인해 보았는데, 법전은 동부경찰서만 2권이 비치되어 있었고, 북부·성동·종암경찰서는 비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남부·서초경찰서는 비치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

다. 권리 관련 서적은 대부분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3) 경찰은 유치인이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한 권리와 제도를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유치시에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권리내용을 유치인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유치장 안에 부착해 둘 필요가 있고, 또 유치인들이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법전이나 관련 서적도 비치해 두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유치인이 법전 등의 구매를 요구하는 데도 들어주지 않는 것은 유치인의 방어권 및 처우 등에 대한 권리의 보장에 문제가 있다 아니 할 수 없다.

타. 기타

1) 소지품 탈취

설문조사에서 '유치장에서 소지품을 빼앗기거나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78명 중 18명이 '그렇다'고 하였다. 빼앗겼다는 소지품은 담배, 라이터, 명함, 돈, 시계, 핸드폰 등이라고 하였고, 동 소지품을 빼앗고 돌려주지 않은 자는 경찰공무원(12명), 의경이나 전경(7명) 등이라고 하였다. 응답자들이 소지품의 영치를 잘못 답한 것인지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실제로 빼앗기고 돌려받지 못한 것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 유치장 내 가혹행위

'유치장에서 맞거나 가혹행위를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6명이 '그렇다'고 하였다.

가혹행위를 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반입금지 품목인 핸드폰을 반입했다가',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시끄럽다고', '사사로운 말싸움 끝에' '증거물을 내놓으라고' '경찰조사중 자신들의 지시를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을 들었고, 가혹행위의 종류에 대해서는 '몇 대 맞았다' '무릎을 꿊리고 발과 고관절

을 차고 손에 볼펜을 끼워 돌리기도 하면서 위협하였다' '유치장에 수감되는 중 형사에 의한 무차별 구타에 이어서 형사의 명령에 의한 전경들의 집단폭력' '차안에서 수갑을 채우고 온몸을 맞았다' '직원 6명으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했고 기절해 있는 본인을 수갑으로 결박한 후 1회용 종이컵에 물을 떠다가 뿌려 가면서 계속 구타하였다' 등을 들었다.

위 답변이 모두 유치장 내에서 벌어진 가혹행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오래 전의 사실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모두가 최근 유치장 내에서 벌어진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과거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어 보이고, 지금도 일부 유치장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된다.

3) 불만사항

또 설문조사시 '검찰 구치감과 비교하여 경찰 유치장이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많은 불만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는 유치장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열거를 해 보면,

'밖이 안 보인다'

'식사할 때 반찬이 한 가지 밖에 안 된다'

'칫솔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음식 그리고 세탁문제'

'둘 다 불결, 환기 안 됨, 특히 유치장 모포는 너무 불결'

'식사의 질이 너무 나쁘다. 공기가 더럽고 모포도 지저분하다'

'냉난방이 안 좋고 특히 식사는 1일 식사(콩보리밥에 단무지 1개)가 매번 같다'

'여성과 남성이 보이기 때문'

'몸이 아파 병원이나 치료를 요구하였지만 전혀 말을 들어 주지 않았다'

'다 보이고 화장실 문턱이 낮고, 경찰들의 지시가 일방적이다'

'수건, 비누, 치약, 칫솔 등이 실내에 있지 않아 불편하다'

'반말, 욕설, 구타행위, 담요, 음식, 환기, 채광 등 환경이 열악함'

'시설, 위생상태'

'신문 볼 권리가 박탈하고, 생활공간 전면이 개방되어 있어 사생활이 전혀 없다' 등이었다.

4. 평가 및 제언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현 유치장 실태는 그동안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제기준이나 행형법규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심지어 반인권적 관행과 운영이 존재함을 알 수가 있었다.

이미 위에서 각 분야에 관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나, 이를 다시 정리하여 몇 가지 개선 방향을 간략히 제시해 보면,

먼저, 유치인에 대한 인식에 전환이 있어야 한다.

유치인은 수사나 재판상의 절차 확보를 위해 구금한 것일 뿐 수형자가 아니다. 따라서 유치장에서 유치인을 교화한다고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 유치인은 무죄인 자로 처우하여야 하고 자유의 제한도 유치목적의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하여야 하며, 유치되기 전의 생활과 최대한 유사하게 그리고 인간답게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하게 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경찰의 의무라는 인식이 절대 필요하다.

둘째, 유치장 시설 및 운영과 유치인의 처우에 관하여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치장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서만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법이 없다. 행형법이 미결구금실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경찰서 유치장을 이에 준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형법에 시설 및 운영, 급여 등에 관한 규정이 거의 없다. 결국 시설운영자인 경찰이 훈령이나 지침에 의해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감시·통제 위주여서 인권침해적인 부분이 많다. 그리고 시설의 운영과 자유의 제한 등이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

루어질 소지가 크다.

따라서 국제기준에 합치한 미결구금시설로서의 유치장에 관한 별도의 법을 만들거나 행형법을 대폭 개정하여 유치장의 설치기준, 환경기준, 운영방법, 유치인에 대한 처우, 특히 생활용품, 침구, 식사, 목욕, 세탁, 운동, 의료에 관한 규정, 신체검사 등 자유 제한의 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 규정으로 보완, 정비하여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시설 및 급여에 관한 획기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

현 유치장은 유치인의 건강 유지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가령 운동장, 세탁장, 진료실, 이불건조기, 세탁물건조대, 세탁기, 냉장고 등)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고, 환경도 열악하다. 또한 유치실 구조와 화장실 등이 너무 감시·통제 위주로 시설되어 있고, 남녀의 유치도 충분하게 격리되어 있지 못해 항상 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급여도 형편이 없다. 생활용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식사의 질이 너무 낮고, 제공하는 침구의 청결도 문제다.

먼저 일상생활과 유사하고 건강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운동장, 세탁장, 진료실 등의 부족한 시설과 이불건조기, 세탁기, 세탁물건조대, 냉장고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유치실 창살이나 화장실과 같이 감시·통제 위주로 되어 있는 시설도 유치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 보호에 맞게 개선하여야 한다. 가령 유치실 창살의 하단부분을 불투명 소재로 막아 유치인의 내부생활이 보호되도록 하고 화장실의 개방된 부분을 막아 소리와 냄새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조명과 환기도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시설을 개선하거나 설비를 보완하여야 한다.

그리고 칫솔, 치약, 수건, 휴지, 전기면도기 등의 생활용품을 지급해야 하고, 식료비 단가를 대폭 높여 최소한 보통의 서민 식사와 비슷한 수준의 관식이 되도록 질을 개선하고, 유치인마다 세탁된 침구가 제공되도록 하고 소독이 정기적으로 행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치인이 원할 경우 의복의 세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필요한 시설도 갖추어야 한다.

넷째, 권리의 고지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유치인은 한편으로는 피의자이다. 피의자로서의 자기 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권리와 제도를 알고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유치되지 않았더라면 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정도로 권리행사와 증거수집이 가능하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유치장 입감시 유치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제도를 고지해 주고 유치장 내에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치장 내에 최신 법전과 최소한의 권리와 관련된 서적을 비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섯째, 부당처우 등에 대한 이의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유치인은 무죄로 추정되는 자이므로 그에 걸맞게 처우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자유의 제한도 허용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유치인은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부당 처우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경찰은 신속히 시정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치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더라도 경찰이 신속히 시정하지 않거나 조치하지 않을 경우 유치된 기간이 짧아 권리구제는 실효성을 잃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유치인의 이의제기나 개선요구시 경찰의 신속한 시정과 조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여성, 소년, 장애인, 외국인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여성, 소년, 장애인, 외국인에 대한 우리나라 현 유치장의 시설과 환경 상황은 남성, 성인, 비장애인, 내국인에 비해 훨씬 불편하고 열악한 편이다.

따라서 여성과 소년은 가능하면 남성과 성인과 별도의 구획된 곳에 수용하도록 시설을 대폭 개조할 필요가 있다. 현 유치장의 실정상 당장 어려운 것이라면 여성과 소년의 유치실과 남성이나 성인의 유치실이 서로 잘 들여다 보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 등의 이동시에도 서로 얼굴이나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내부 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체검사도 여성이나 소년과 남성이나 성인이 서로 인식할 수 없는 장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시설을 하거나 개선하여

야 한다. 또 여성 유치인에게는 최소한의 몸단장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화장수, 크림 등의 화장품과 빗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장애인 유치인을 위해 목발, 휠체어 등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최근 외국인 유치인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통역이 가능한 경찰관을 유치장에 배치하거나 언제라도 통역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두고, 유치장 안에 유치인의 제 권리와 일과표 등을 여러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부착하거나 비치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및 자료

- 1) 「경찰학연구」, 2002년 1월호, 경찰대학교
- 2) 「국제인권원칙과 한국의 행정」, 1993, 서울지방변호사회
- 3) '유치장 환경개선 사업(2001년)', 경찰청
- 4) '유치인 관·사식 급식방법 개선방안', 경찰청
- 5) 한국일보 2001. 1. 31.자

구 치 감

한 석 종

1. 머리말

구치감은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된 후 검사의 조사를 받기 위해 일시 대기하는 수용장소이다. 그러나 정식 수용시설인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교도소와 달리 임시 수용시설이라는 시설 자체의 특성상 감독과 관리가 제대로 미치지 못하여 행형일반규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수용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수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해 오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본 조사에서는 검찰청 구치감도 조사 수용시설의 대상에 포함시켜 시설조사를 시행하였다. 다만 조사인력의 한계로 인하여 서울 및 수도권 전역의 구치감 조사에는 미치지 못하고, 대표적으로 서울지방검찰청 구치감에 대하여만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응답자들로부터 구치감 일반의 시설현황 및 관리운영 실태에 관한 설문응답을 받아 약간의 보완을 하였다.

구치장에 대한 금번 조사는 그 동안 전혀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구치감도 조사의 대상으로 삼아 그 시설현황 및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두었으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향후 더욱 보완해 갈 예정이다.

2. 조사의 개요

가. 시설 목적

정식 수용시설이 아니어서 구금시설 일반의 관심 영역에서 벗어나 있고,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관리 감독이 소홀하고, 피구금자의 인권이 침해되기 쉬운

임시 수용시설에 대하여 1차적인 시설조사를 통해 기본실태를 점검하고, 시급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을 도모하는 데 조사의 목적을 두었다.

나. 조사 방법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위원들이 관내 구치감 6개(서울지방검찰청 본청, 동부지청, 서부지청, 남부지청, 북부지청, 의정부지청) 중 대표적으로 서울지방검찰청 구치감을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하였고, 이와 아울러 구치소, 교도소에 수감중이거나 출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응답을 받아 조사의 기초자료로 삼았다.

다. 조사 경위

1) 시설조사의 경위

사전에 본회에서 서울지방검찰청으로 구치감 시설조사에 대한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구한 다음 2002. 4. 22. 14:00경 본회 인권위원회 소속 김진, 유원석, 장철우 변호사가 구치감을 방문하였다. 서울지검측에서는 총무부 김주원 검사와 교도관실 서울구치소 출정과장의 안내로 약 40여분에 걸쳐서 구치감의 구금시설을 조사하였다.

2) 설문조사의 경위

다른 항목의 설문조사경위와 같으므로 서술은 생략한다.

3. 조사 결과

가. 시설 개황

서울지방검찰청의 경우 본청 건물의 별관을 애초 구치감 시설로 따로 지어 1~4층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루 평균 출정인원은 검사조사의 경우 80명, 공판의 경우는 229명으로 집계된다고 한다. 수용시설로 4개의 사동이 있는데 그 중 1개는 여사이고, 3개는 남사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중 2개 사동은 비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대기실은 총 56개인데 1.4평 규모는 32개, 2.3평 및 2.4평, 2.9평 규모는 각 8개이다.

1.4평의 대기실은 독거실로 사용되고, 2.3평 내지 2.9평 대기실은 혼거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각 대기실에는 최대인원 9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최대 규모인 2.9평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수용자 1인당 점유면적이 0.32 평에 불과하여 다소 과밀한 듯이 보인다(앉아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수용인원 계산이지만 대기시간이 후술하는 바와 같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어 장시간 대기시 수용자들이 불편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거실에는 창문이 없어 환기에 지장이 있고, 그 조명도 어두워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쉬운 구조이며, 혼거실에는 복도 쪽으로만 창문이 나 있어 외부채광은 불가능하다.

한편 구치감 내에는 각 대기실별로 0.3평 남짓한 수세식 변기가 설치되어 있고, 변기 앞쪽으로 0.8m가량의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휴지는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지급해 주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경찰서 유치장의 경우와 달리 구치감 내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별도의 방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며 구치소나 경찰서에서 올 경우에는 이미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따로 실시하지 않고, 다만 조사 후에만 실시하며, 신체검사를 실시할 경우 2동 3방 아래 밀폐된 방을 하나 정해 놓고 그 곳에서 신체검사를 한다고 하며 여성수용자들의 경우 여성교도관 1인이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나. 냉난방 · 조명시설

1) 현장조사

에어콘이나 온풍기 등 독립된 냉난방시설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검찰

청과 동일하게 중앙 냉난방의 형식이며, 조명은 문쪽에 0.3m의 형광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다소 어두운 편이어서 독서나 편지 등 활동을 하기에는 부적합하고 수용중인 자가 대부분 조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분위기에 의하여 심리적인 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설문조사

조명상태에 관하여 1문항, 냉난방시설 및 그 가동실태에 관하여 4문항의 질문이 있었다.

우선, 구치감의 조명상태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응답자 78명 중 34명은 '적당했다'고 답한 반면, '적당한 밝기여서 머무는 데 불편이 없었다'고 답한 사람은 13명, '너무 어두워서 생활하기 불편했다'고 답한 사람은 17명이었고, 나머지는 무응답이었다. 전체적인 의견을 보면 견딜 만한 정도라고 보는 의견이 많은 편이어서 조명상태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정도는 아니나 응답자 중 26.5%가 조명이 어두워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개선할 사항 중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다음으로, 냉난방에 관하여는 4개의 질문이 있었다.

첫째, 냉방시설의 가동여부에 관하여(여름철에 수용되었던 사람에 대한 한정적인 질문임)는 응답자 중 '일체의 냉방시설이 없었다'고 답한 사람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냉방시설은 있었으나 틀어주지 않았다'는 응답자도 3명이나 있었고 일부 응답자(1명)는 '보행통로에 냉방기기가 설치되어 있어 각 방으로 까지 냉기가 전달되지 않아 냉방의 편차가 심했다'고 답했다. 그리고 '냉방시설을 틀어주었다'고 답한 사람은 7명이었다. 전체적으로 냉방시설이 없거나 있어도 가동하지 않고 혹은 가동해도 냉기가 전달되지 않아 불편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어(응답자 33명중 25명으로서 약 75.7%에 해당) 냉방시설의 보완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 난방시설의 가동 여부에 관하여(겨울철에 수용되었던 사람에 대한 한정적인 질문임)는 응답자 중 가장 많은 19명이 '일체의 난방시설이 없었다'고 답변했고, '난방시설은 있었으나 틀어주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이 5명, '난방시설을 틀어주었다'고 답한 사람이 19명, '기타 약하다'고 답한 사람이 1명으로 집계되었다. 난방시설의 경우에도 냉방시설과 마찬가지로 난방시설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틀어주지 않고, 틀어주어도 약하다는 불편 의견이 전체 응답자 중 75.7%를 점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 보인다.

셋째, 구치감 내 난방시설의 종류에 관하여 묻는 질문에 있어서는 감방 내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난로'가 1명, '라디에이터'가 7명, '온풍기'가 6명, '온돌'이 9명, 복도에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난로'가 5명, '라디에이터'가 6명, '온풍기'가 3명, '온돌'이 1명 등으로 집계되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감방 안에 라디에이터나 온돌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임이 확인되었다.

넷째, 담요나 모포 등 추위를 막기 위한 물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겨울철 수용자에 한정), '지급받았다'는 응답이 12명, '지급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15명,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너무 더러워서 불쾌했다'는 응답이 7명,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추운 것은 마찬가지였다'는 응답이 8명,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너무 더러워서 불쾌했고, 그래도 추운 것은 마찬가지였다'는 응답이 3명으로 나왔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응답자 45명 중 12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자(약 73.3%)는 침구 등 방한물품이 매우 열악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방한물품의 지급에 많은 개선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위생 · 청결상태

구치감의 위생 · 청결상태에 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깨끗했으며, 청소도 잘 되어 있었다'는 응답이 5명, '적당했다'는 응답이 30명, '너무 더러워서 불쾌했다'는 응답이 30명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청결상태에 대한 불만

은 약 절반 가량이라고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청결상태는 개별 구치감 시설에 따라 편차가 클 것으로 보이며, 시설이 오래되고 낙후한 구치감일수록 위생 및 청결유지에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치감 내의 화장실 상태에 관하여 응답자 중 24명이 '사용하기 싫을 정도로 더러워 불쾌했다'고 응답하여 응답자의 36.3% 정도가 불결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아울러 화장실 내에 차폐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낮아 수치심을 느낄 정도라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66명 중 38명(약 57.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화장실에 차폐막을 설치하거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차폐막의 높이를 조정할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라. 환기상태

설문조사에 의하면, '환기가 잘 되었고, 실내 공기가 맑았다'는 응답이 7명, '보통이었다'는 응답이 30명, 환기가 되지 않아 악취가 심했다는 응답이 28명으로 나왔는 바,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환기, 악취문제를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식사제공 여부

구치감은 임시 대기실로서 머무르는 시간이 다른 수용시설에 비해 비교적 짧은 곳이기 때문에 자칫 피구금자에 대한 식사제공이 간과되거나 소홀히 될 수 있는 곳이어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다행히 설문조사 결과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다만 제때에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선점으로 지적된다.

조사에 의하면, '식사가 전혀 제공되지 않아서 짖었다'는 응답이 1명, '식사가 제때 제공되었다'는 응답이 34명, '식사시간이 지난 후 밥을 주었다'는 응답

이 8명, '구치감에서 식사가 제공되지는 않았고, 구치소에서 싸온 도시락을 주었다'는 응답이 17명, '기타' 2명, '식사시간이 아니었음'이 1명으로 나타났다.

바. 신체검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신체검사는 범죄예방이나 사고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피검사자의 수치심 유발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은데, 금번 설문조사에서도 상당수 응답자들이 그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구치감에 들어가서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응답자의 약 절반 가량인 25명이 '그렇다'고 답변하였고, '아니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28명이었다.

다음으로, 수치심을 느꼈을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관해서는, 응답자 20명 중 '알몸검사'가 4명, '완전히 발가벗겨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때문'이 1명, '여러 명이 한꺼번에 옷을 벗으라고 할 때'가 1명, '홀딱 벗으라고 하니까'가 1명, '알몸상태에서 몸 전체를 검사하기 때문'이 1명, '집단적으로 상·하의를 탈의시킬 때'가 1명으로 집계되어 전체적으로 알몸 신체검사 자체가 심한 수치심이나 창피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항문검사, 예컨대 '항문검사를 한다고 하며 발가벗고 쪼그리라고 할 때' '항문을 들여다보고 성기를 볼 때' '나체로 검사하고 항문을 손으로 까라고 할 때' 등의 점을 지적하는 응답자도 있어 치부 등에 관한 신체검사가 인격을 매우 침해하고 모멸감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발견되었다.

사. 계구 착용 여부 및 종류

설문조사에 의하면, 구치감 내에서도 계구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가령 응답자 65명 중 계구를 풀어주었다는 응답이 39명으로 가장 많지만 '그

렇지 않다'고 답한 경우도 17명, '경우에 따라 달랐다'고 답한 사람이 9명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편 구치감 내에서 착용한 계구의 종류에 관하여 보자면, 가장 일반적인 것은 '수갑'으로 21명이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포승'이나 '사슬'까지 하는 경우, 혹은 '수갑' 외에 포승을 하거나 그 밖에 '사슬' '안면보호구'까지 하는 경우도 응답자 35명 중 14명이나 나와 지나치게 인신을 구속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속한 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된다.

또한 화장실에 용변을 볼 때에도 계구를 풀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응답자 31명 중 22명(70%)가 '계구를 착용하고 용변을 봐야 했다'고 응답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의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아. 구치감 내 폭력 등의 행위에 관하여

"구치감에서 맞거나 가혹행위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설문자 78명 중 5명이 '그렇다'고 답변하였고, "누가 가혹행위를 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검사'가 1명, '구치감의 경찰공무원'이 4명, '구치소직원'이 1명, '동료 수감자'가 3명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혹행위의 이유와 종류에 대한 질문에는, '이유없이'가 1명, 괜히 '시범적으로'가 1명, '죄명을 보고'가 1명, '반말·폭언 등에 항의하여 폭압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가 1명,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대하고 욕설을 한 경우'가 1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거에 비하여 폭력 등의 행위 사례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1998년경 천주교인원위원회 및 인권운동사랑방에서 행한 재소자 상대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도관이나 경비교도대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이 총 230명 중 31.7%인 73명에 이르고 폭행의 종류도 봉동이 구타, 손 구타, 물 고문, 수갑·포승 따위의 과잉사용, 기합, 회초리, 심한 욕설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비록 구치감이 아닌 교도소나 구치소에 관한 조사였지만 구치감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임) 여전히 폭력 등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관한 상당한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자. 진료

설문조사에 의하면 구치감에서 아팠을 때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 58명 중 16명은 '그렇다'고 답하였고, 15명은 '아니다', 27명은 '아픈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가 각기 절반 정도로 나타났는 바, 의사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이처럼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점이 확인되므로, 진료에 대한 처우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특히 서울지검 구치감 조사위원들이 현장조사 당시 관리자에게 문의해 본 바에 의하면, 구치감 내에는 의료진이 없는 것은 물론 의료시설, 최소한의 상비약도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환자가 있을 경우 법원 의무실을 이용하든지 외부로 나간다는 것이었는데, 이로 미루어 보면 구치감 내에서는 사실상 진료를 받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차. 법전 비치 여부

조사를 받으려 가기 위해 잠시 대기하는 피조사자가 법률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구치감 내 법전이 비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데, 설문조사에 의하면, 구치감에 법전이 비치되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응답자 56명 중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54명은 비치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한 법전을 보여주도록 담당자에게 요구하여 볼 수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긍정의 답변이 7명, 부정의 답변이 20명으로 부정의 답변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법전비치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법전의 열람

요구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시정이 요망된다.

카. 경찰서 유치장과 검찰 구치감의 비교

위 설문에 응답한 29명은 경찰서 유치장과 비교하여 검찰의 구치감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그 사유로 여러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있는 바, 그중 중요한 사항을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청결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1명), '청결하지 못했고 악취가 심했다' (1명), '청결이나 냉난방, 환기, 채광 등 구치감의 환경이 열악하다' (1명), '너무 지저분함, 가을에 굉장히 추움' (1명), '악취, 어둡고, 냉방이 잘 되지 않는다' (1명), '청소미비, 도서 미비치, 조명 어두움, 변기 지저분함' (1명), '냉난방시설, 환기, 조명, 화장실, 식사문제, 불결한 환경, 수치심을 느낄 만큼 위압적인 교도관의 태도' (1명), '식수, 화장지, 청결상태 등이 유치장보다 못하다' (1명) 등 위생상태의 불결이나 조명, 냉난방 등의 기초시설의 열악함을 주로 지적하고 있다.

그 밖에 '계구를 사용하여 상당히 불편하다 …' (1명), '조사를 받기 위해 하루 종일 수갑, 포승을 하고 있어야 하는 점' (1명), '미결수는 죄인이 아니다. 좀더 자유롭게 해달라' (1명), '계구착용, 냉난방시설이 없다' (1명) 등 지나치게 인신을 구속하는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을 많이 지적하고 있다.

이같이 구치감이 경찰서 유치장에 비해서 시설 일반이 열악하다고 평가받는 것은 구치감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보인다. 예컨대 서울지검 구치감은 서울구치소측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구치소와 같은 일상적인 관리가 행해지지 않고 있으며, 검찰청에서도 유치장 감찰은 행하고 있지만 구치소 감찰은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조사 당시 참여 검사의 설명이었다. 따라서 내부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본회 인권위원회에서 법무부 및 서울지검에 문의해 본 결과 구치감 감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행형법 및 동법 시행령 일반을 준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에 따라 지속

적인 점검과 시설개선 등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타. 구치감의 대기시간

이번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중에서 구치감의 대기시간도 중요한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치감에 갇혀 있던 평균시간이 '1시간 이내'는 4명, '1시간~3시간' (13명), '3시간~6시간' (18명), '6시간~12시간' (20명), '12시간~24시간' (4명)으로 나타나는 바, 대기기간이 6시간이상 12시간에 이르는 대기자들도 20명에 이르고, 이를 초과하는 사람도 있어 불필요하게 피조사자를 오래 대기시키는 기준의 검찰수사관행의 문제점이 새삼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기관행은 수감자에게 좁고 냉난방이 부족한 대기실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을 머무르게 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줌은 물론이고 그것이 때로는 수감자로 하여금 자백을 받아 내기 위한 심리적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변호인의 접견권 제한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가령 특별히 조사 할 내용이 많지 않음에도 피의자를 구속 이후 공소제기시까지 매일 계속하여 검찰청으로 불러 내면서도 정작 조사는 짧은 시간에 마치거나 잠깐 조사실에 부르는 정도로 그치고 나머지 시간을 계속 구치감에 대기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 기간 동안 가족이나 변호인의 면회가 사실상 제한됨은 물론이고 피의자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자신에게 불리한 자백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구치감 내 장시간 대기관행은 구치감의 시설조사나 운영실태 문제의 개선과 함께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 문제점으로 보인다.

4. 맺음말

우선 이번 조사는 여러 면에서 한계가 지적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으로서 조사를 시행하는 주체의 인력 부족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조사

를 보다 광범위하게 시행함으로써 다양한 구금시설로부터 문제점을 발굴해 낼 수 있는데, 어렵게 본회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로 한정되어 조사대상이 한정될 수밖에 없었고, 조사도 그만큼 세밀하고 밀도 있게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다음으로, 현장조사의 경우 관계기관의 협조에 제한이 있어 단지 기관책임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에 한정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조사의 내용에도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설문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수가 적어 오차가 많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응답자의 주관에 따라 평가가 매우 달라지는 등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는 구금시설, 특히 그 동안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구치감 시설을 방문하고, 직접 둘러보면서 현장조사를 시행하였던 점, 변호사단체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을 대외적으로 알렸다는 점, 그로 인하여 관계기간의 개선 노력이 조금이나마 고취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성과라면 성과이다.

아무튼 이번 조사를 토대로 하여 향후에 많은 보완과 발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Ⅱ. 쟁점별 운영실태 및 정책제언

- 권리구제
- 건강·의료
- 징벌

권리구제

이상희

1. 문제 제기

구금시설¹⁾ 내의 갈등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수용자와 수용자 사이의 갈등과, 수용자와 교도관 사이의 갈등이다. 사회와의 단절에서 오는 불안감, 심각한 수준의 과밀수용,²⁾ 교도관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은 이들의 갈등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교도소가 미결수용자에게는 수사와 재판을 받기 위해 잠시 수용되는 장소이고, 수형자에게는 사회에 복귀하게 하는 곳(행형법 제1조)이므로, 교도소 내에서의 갈등해결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갈등해결 방식으로 교육, 외부 인파의 교통 등 여러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으나, **자신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갈등의 심화를 막을**

1) 이 글에서 구금시설이라 함은 행형법이 적용되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그 지소, 유치장 등을 의미한다.

2) 2001년 국정감사 자료집에 의하면, 교정시설 수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수용정원	수용인원			수용밀도 (명/평)
		계	기결	미결	
1998. 7.	56,500	69,726 (100%)	37,890 (54.3%)	31,836 (45.7%)	2.26
1999. 7.	58,000	69,299 (100%)	40,538 (58.5%)	28,761 (41.5%)	2.17
2000. 7.	58,000	64,086 (100%)	39,638 (61.9%)	24,448 (38.1%)	2.03
2001. 7.	58,000	62,724 (100%)	38,650 (61.6%)	24,074 (38.4%)	1.99

수 있고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약칭한다)가 구금시설 실태조사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단이 매우 미약하며 존재하는 제도마저 실효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켜 분쟁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구금시설 내에서의 갈등(특히 수용자와 교도관 사이의 갈등) 해결을 위한 장치에 대하여 검토하고, 제도운영의 실태와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권리구제 수단의 고지

가. 현행 법규

1999년에 개정된 행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는 신입자에 대하여 소장이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접견 및 서신에 관한 사항, 규율·징벌 및 청원에 관한 사항, 기타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이다. 위 규정에 의하여 소장은 신입자에게,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처우에 대한 불복은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 방법에는 행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청원뿐 아니라 기타 행정소송 등의 일반소송도 있고 소장에 대한 면담도 있다(행형법 시행령 제9조는 처우 및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원뿐 아니라 소장 면담이나 일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³⁾

3) 수용자들 대부분은 권리구제 수단에 대해 무지할 뿐 아니라,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이 불

나. 운영실태 및 문제점

인권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청원 등 불복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 통지받은 사람이 응답자 67명 중 11명에 불과하였고, 55명은 통지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통지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 14명이 답변했는데, 문서 통지와 구두 통지가 각 7명이었다.

영등포구치소와 영등포교도소 협지 방문조사 결과, 각 거실에 수용자의 규율사항 등이 부착되어 있었으나, 청원 등 불복방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다. 개선 방안

불복방법에 대한 고지가 권리행사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위 설문조사 결과(16.4%만이 고지를 받았음)는 수용자의 권리구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수용자의 의무사항은 서면으로 기재되어 각 거실에 부착되어 있는 반면 권리구제 수단은 구두로 간단히 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권리구제 수단 고지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은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시설수용자를 최초로 보호·수용하는 때에 시설수용자에게 인권침해 사실을 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고지하도록 하였고, 진정권과 진정방법을 기재한 안내서를 시설수용자가 상시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도록 하였다(시행령 제6조). 그리고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도 '모든 피구금자는 수용과 동시에 자기가 속하는 범주의 피구금자에 대한 처우규칙,

이익한 처우와 직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부당한 처우에 대한 불복이 수용자의 권리임을 인식시켜 주고, 갈등해결을 공식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규율을 위한 의무사항, 정보를 구하고 불복을 신청하는 정당한 수단 및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시설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피구금자가 문자를 해독할 수 없을 때에는 전항의 정보는 구술로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제35조)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정보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규율사항과 마찬가지로 청원 등 불복방법에 대하여도 서면으로 고지하고, 문자를 해독할 수 없을 때에는 구술로 알려주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3. 청원 및 소장 면담

가. 현행 법규

수용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는데(행형법 제6조 제1항),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하고자 할 때는 청원서 제출에 의하고, 순회점검공무원⁴⁾에게 청원할 때는 청원서 또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서는 수용자가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고,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할 수 없다(법 제6조 제2, 3항).⁵⁾ 소장은 수용자의 청원을 저지하거나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고(법 제6조 제5항), 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써 하되 지체없이 결정서를

4) 순회점검공무원이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순회점검의 명을 받은 공무원으로서, 2년에 1회 이상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를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을 구술에 의하는 경우, 교도관을 참여시키지 못하고,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순회점검공무원은 청원을 심사한 후 그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하나, 청원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스스로 그에 대한 결정을 못한다.

5) 1999년 개정 전에는 청원서 집필 신청을 할 때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소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청원 내용의 비밀성 보장이 문제되었으나, 1999년 개정 때 위 규정이 폐지되었다.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법 제6조 제6항).

'수용자청원처리지침'에서 청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치침에 의하면, 수용자가 청원을 신청하는 경우 담당교도관은 지체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소장은 당해 수용자에게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지침 제5조 제1항). 그리고 청원에 대하여 각하, 기각, 처분취소 또는 변경 등을 할 수 있는데, 각하 사유로 ①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출한 청원, ② 자기 자신에 대한 처분이 아닌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 ③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 ④ 헌법소원,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쟁송중에 있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청원, ⑤ 동일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제출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용자는 교도소 등의 처우 및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신청을 할 수 있다. 2000. 3. 28. 개정 전에는 '소장은 매주 1회 이상의 면접일을 정하고 수용자의 처우 또는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면담을 원하는 수용자를 면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으나, 개정 시행령에서는 소장의 의무규정을 삭제하였다.

나. 운영실태 및 문제점

1) 청원과 관련하여

청원과 관련한 인권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하기 위하여 집필신청을 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해 64명 중 4명만이 신청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집필신청의 경험이 있는 자 중 2명이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⁶⁾ 청원결정문 수령기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총 3명이 답변하였는데, 1개월 이내가 1명, 1개월 내지 2개월이

6) 집필신청을 해 본 경험이 없다고 답변한 응답자 중 집필을 거부당하였다고 답한 응답자가 2명, 집필을 허가받았다고 답한 응답자가 1명 있었다. 이는 설문내용을 오해하여 생긴 것으로, 이 글에서는 집필을 거부당한 분들의 위 응답은 통계로 넣지 않았다.

답변을 받지 못한 사람이 1명이었다. 그리고 청원결과에 대해서는 모두 3 응답하였는데, 1명이 기각결정을 받았고, 2명이 각하결정을 받았다고 응 답하였다.

한편 수감생활 중 순회점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68명 중 30명이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했고, 교도소를 방문한 공무원에게 구두나 문서로 청원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53명의 응답자 중 50명이 없었다고 했으며, 검열관에게 청원을 하려고 할 때 교도관들에게 제지를 당하거나 방해를 받은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16명의 응답자 중 3명이 방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1명은 교도관이 사전에 '순회점검시 이야기하면 큰일난다'는 경고를 했다고 답변했다.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 때문에 나중에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13명의 응답자 중 2명이 그렇다고 답변했다.

과밀수용, 열악한 환경, 교도관의 업무과중 등으로 인해 교도소 내에서의 처우가 열악할 수밖에 없고, 실제 낙후된 교정시설과 규율 중심의 행형제도로 인해 수용자들의 불만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6.25%만이 청원을 위해 집필신청을 했다는 것은 청원제도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고 할 것이다. 청원하는 수용자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수용자들이 청원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청원이 불이익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거나, 죄를 짓고 들어왔으면 조용히 살다 나가야 한다는 주변의 명시적, 묵시적 압력 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청원집필을 신청한 자 중 4명이 거부당하였다고 했는데 신청자 수에 비추어보면 이는 매우 높은 비율이다. 법무부장관이 청원을 각하할 수는 있겠으나 청원 자체는 법률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청원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청원 결과는 청원자가 매우 적어 분석하기 어려우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받았고, 처분취소 또는 변경 등의 결정을 받은 사

람이 없었다. 아래의 2001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법무부장관이 수용자의 처우 개선에 매우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계	가석방·감형 등 요망	의료조치·이송 등 요망	부당처우 개선요망	기타
계	653	42	220	201	190
처우반영	55	4	27	11	13
기각·각하	464	34	155	149	126
취하	78	2	21	28	27
심사중	56	2	17	13	24

한편 청원 처리기간과 관련해서, 3명의 응답자 중 1개월 이내에 결정을 받은 자가 1명이고, 1~2개월 걸린 자가 1명, 아예 답변을 받지 못한 자가 1명으로 나왔다.

행형법은 결정서를 지체없이 청원인에게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행형법 제6조 제6항), 처리와 관련하여 신속하게 심사,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청원결정의 지연은 신속한 권리구제를 불가능하게 하고, 수용자의 불만만 깊어지게 하며, 이로 인해 수용자와 교도관 사이의 충돌을 야기시키는 바, 청원이 적절한 권리구제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을 막는 주된 요인 중 하나라고 할 것이다.

순회점검공무원제도와 관련해서는 44.1%가 그 제도 자체를 모른다고 답변하고 있는 바, 순회점검공무원제도가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소장 면담과 관련하여

수감생활 중 소장과의 면담을 신청한 사람은 73명의 응답자 중 10명이었는데, 위 10명 중 4명만이 소장과 면담하였다고 답변했고, 나머지 6명은 끝내 면